

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

의안 번호	17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1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재해발생을 대비하여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
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주요골자

- 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
이자수익금으로 함.
-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계좌를 설치
- 기금의 용도는 사망·실종자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, 이재민 생
계구호, 생필품의 급여, 구호비축물자의 구입등으로 함.

근거법령 : 재해구호법 제15조,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

칙 부

1.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 1부
2. 관계법령 발췌 1부

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(안)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5조, 제16조 및 등법시행령 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구호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
2. 기금의 이자수익금
3. 기타 잡수입

제3조 (기금의 운용 관리)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계좌를 설치한다.

②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 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.

제4조 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재해에 관련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사망, 실종자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
2. 생계구호
3. 식품, 의류, 침구 등 생활필수품의 급여
4. 비축물자의 구입
5. 주택구호(응급 주택수리등)
6. 의연물품의 조작 경비
7. 기타 재해구호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의비용

②구호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 (회계 공무원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, 기금본임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.

②기금운용관은 브사한경극장, 기금본임운용관은 사회과장, 기금출납공무원은 복지계장으로 한다.

제 6조 (회계관리)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7조 (결산 및 보고)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 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 8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